

글로벌 정책환경 개선 TF 조사결과

브라질

※본 자료는 글로벌 정책환경 개선 TF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이며,
현행 법제와는 상이할 수 있는 참고용 자료임을 알립니다.



1. 결제 및 환불 관련

1

1. 결제수단	2
1-1. 대금 지급 방법	2
1-2. 포인트/사이버 캐시	2
1-3. 사이버 캐시의 상사시효	2
2. 표시광고	2
2-1. 표시광고(정보제공)	2
2-2. 표시광고(광고시 배제해야 될 내용)	2
3. 청약철회	2
3-1. 청약철회	2
3-2. 환불	3
4. 환불	3
4-1. 표준약관 환불	3
4-2. 표준약관 과오납금 환불	3
5. 미성년자 결제	4
5-1. 미성년자 연령 기준	4
5-2.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결제관련)	4
5-3.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권한	4
5-4. 고지의 의무(계약 시)	4
5-5. 고지의 의무(게임물 결제 내역 관련)	4
6. 결제 환불 관련 기타	5
6-1. 전자문서 활용	5
6-2. 거래기록 보존	5
6-3. 조작 실수 방지	5
6-4. 전자적 대금 지급 신뢰확보	5
6-5. 사이버몰 신원 표시	6
6-6. 청약 확인	6
6-7. 휴업기간 업무처리	6
6-8. 결제한도	6
6-9. 추천 광고	6

1. 등급심의	8
1-1. 등급분류 필요여부(사전/사후)	8
1-2. 등급분류 주체	8
1-3.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	8
1-4. 게임 이용등급 구분 및 이용등급별 분류 사항	8
1-5. 등급분류 신청절차 및 필요자료	9
1-6. 등급분류 처리기간 및 비용	9
2. 등급분류 사후관리	10
2-1. 등급분류의 거부	10
2-2. 등급분류 이후 의무 표기 사항, 방법	10
2-3. 등급분류 효력	10
2-4.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자 준수 제도	10
2-5. 등급의 조정	11
2-6. 등급분류의 취소	11
2-7. 등급분류 효력 유지기간(별도 갱신 필요성)	11
3. 확률형 아이템	11
3-1. 판매 가능 여부	11
3-2. 적용 대상	11
3-3. 준수 사항	11
3-4. 미 준수 시 페널티	12
3-5. 자율규제 존재 여부 및 세부내용	12
4. 광고 관련	12
4-1. 콘텐츠 광고 규정 등 광고 내 등급 표기 관련 표시의무	12



1. 본인인증/미성년자 관련	14
1-1. 본인인증/ID 생성	14
1-2. 연령 확인(미성년자 연령 확인)	14
1-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개인정보 관련)	14
1-4.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14
1-5. 미성년자 청약철회	14
1-6. 강제적 섯다운제	14
1-7. 선택적 섯다운제	14
1-8. 미성년자 정의	15
1-9. 미성년자보호법	15
1-10. 미성년자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관련 법률(게임이용 관련)	15

1.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17
1-1. 개인정보 수집 방법(동의, 고지 등)	17
1-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방법(동의, 고지 등)	17
1-3. 개인정보 처리 위탁(동의, 고지, 수탁 업체 계약방법)	17
2. 개인정보 처리	18
2-1. 개인정보 파기	18
2-2. 장기 미 접속 계정 휴면 처리 방법	18
2-3. 개인정보 처리 방침	18
2-4.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19
2-5.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19
2-6. 국외 이전 방법(동의, 방법, 동의 시 고지사항)	19
2-7. 광고성 정보(수신, 동의, 고지, 발송, 방법)	19
3. 개인정보보호	20
3-1. 이용자 개인정보 권익보호방법	20
3-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보상보험 요건	20
3-3. 데이터 침해에 대한 보상	20
3-4. 개인정보 유출 손해 배상 보험	21

1. 게임 관련 법령/규정	23
1-1. 게임법 유무	23
1-2. 게임 관련 규정	23
2. 경품 이벤트	23
2-1. 관련 법령	23
3. 법인 설립/서버 필수 여부 등	23
3-1. 국내 대리인 지정	23
3-2. 법인 설립 의무	23
3-3. 서버 설치 의무	23
4. 외국인 투자 제한	24
4-1. 외국인 투자대상 제외	24
4-2.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24
4-3. 외국인의 국내 진출	24
5. 서비스 허가증	24
5-1. 서비스 허가증(콘텐츠 제공시 승인사항)	24



1. 결제 및 환불 관련

1. 결제수단

1-1. 대금지급 방법

- 관련 법률 : N/A

1-2. 포인트/사이버 캐시

- 관련 법률 : N/A

1-3. 상사시효

- 관련 법률 : N/A

2. 표시광고

2-1. 표시광고(정보제공)

- 관련 법률 : 소비자보호법
- 부연 설명 : 소비자보호법 제2조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음
 - 1) 기업명, 주소 이메일
 - 2) 제품의 특성, 가용성, 결제방법

2-2. 표시광고(광고시 배제해야 될 내용)

- 관련 법률 : 소비자보호법
- 부연 설명 : 소비자보호법 제36~38조에 따르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모욕적·차별적인 광고, 필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광고는 금지되고, 이를 어길 시 제67조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3. 청약철회

3-1. 청약철회

- 관련 법률 :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 계약에 관한 법령

- 부연 설명 : 소비자보호법 제49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전화판매 또는 방문 판매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각 계약 체결 혹은 상품이나 서비스 인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소비자가 위와 같이 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은 즉시 반환 되어야 함

전자상거래 계약에 관한 법령 제5조에 따르면 공급자는 소비자가 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명확하고 가시적인 방식으로 알려야 함. 소비자는 계약 시 사용한 동일한 수단으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위약금 등 별도의 비용을 치르지 않고 계약을 종료함

3-2. 환불

- 관련 법률 : 소비자보호법
- 부연 설명 : 소비자보호법 제20조에 따르면 제안이나 광고 메시지에 담긴 표기와 달리 품질이 떨어지거나 품질 차이가 있을 경우 품질에 비례하여 가격의 비례 인하를 요구하거나 결제 금액의 환불을 요구할 권리를 가짐

동법 제24조 및 25조는 사업자가 계약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계약 조건을 금하고, 제26조 제1항은 비내구 제품·서비스의 쉽게 발견되는 하자에 대해 사용자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제품이 배송된 순간부터 30일로 정함

4. 환불

4-1. 표준약관 환불

- 관련 법률 : N/A

4-2. 표준약관 과오납금 환불

- 관련 법률 : N/A

5. 미성년자 결제

5-1. 미성년자 연령 기준

- 관련 법률 : 아동청소년법
- 부연 설명 : 아동청소년법 제2조에서는 아동을 만 12세 미만으로, 청소년을 만 12~18세의 사람으로 정의함

5-2.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결제 관련)

- 관련 법률 : 민법
- 부연 설명 : 민법 제3조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인 자는 스스로 법적 행위를 수행할 수 없고, 제4조 1호는 만 16세부터 만 18세인 자는 제한된 몇 가지 법적 행위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함

5-3.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권한

- 관련 법률 : 민법, 소비자보호법
- 부연 설명 :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계약을 할 수 없고, 미성년자가 무단 구매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은 소비자보호법 제39조 4목을 통해 해당 행위를 피해 사례로 주장할 수 있음

또한 법정대리인은 동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행위가 위법한 채권 추심이라 주장하고 지급된 금액의 두 배를 요구할 수 있음

5-4. 고지의 의무(계약 시)

- 관련 법률 : N/A

5-5. 고지의 의무(게임물 결제 내역 관련)

- 관련 법률 : N/A

6. 결제 환불 관련 기타

6-1. 전자문서 활용

- 관련 법률 : 전자상거래 계약에 관한 법령
- 부연 설명 : 전자상거래의 경우, 제4조제5항에 따라 소비자가 정보, 의심, 불만, 계약 정지 또는 해지에 관한 클레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자 형태로 적절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6-2. 거래기록 보존

- 관련 법률 : 소비자보호법
- 부연 설명 : 소비자보호법 제43조에는 등록, 기록, 개인정보와 소비정보를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전달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과거 5년을 초과하는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됨을 규정하고 있음

6-3. 조작 실수 방지

- 관련 법률 : 소비자보호법
- 부연 설명 : 제4조제2항에 공급자가 계약 완료 전에 단계적으로 발생하는 즉각적인 오류를 식별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6-4. 전자적 대금 지급 신뢰확보

- 관련 법률 : 소비자보호법
- 부연 설명 : 제2조는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함
 - 1)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을 포함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필수 사항
 - 2) 배송비나 보험료 등 추가적이거나 부수적인 비용의 금액 명세서
 - 3) 지불조건, 가용성, 서비스 수행 형식 및 기간을 포함하는 서비스 제공의 전체 조건

나아가 제4조에서는 공급자가 소비자 선택권의 완전한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강조해야 하며 계약 전에 계약서의 요약본을 제시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명시함

6-5. 사이버몰 신원 표시

- 관련 법률 : 소비자보호법
- 부연 설명 : ‘2-1. 표시광고(정보제공)’ 참고

6-6. 청약 확인

- 관련 법률 : 소비자보호법
- 부연 설명 :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 수락을 즉시 확인해야 함

6-7. 휴업기간 업무처리

- 관련 법률 : 소비자보호법
- 부연 설명 : 제49조에 규정된 철회권의 경우, 민법에는 반품 기간이 주말 포함 7일로 규정되어있음. 단, 7일째가 영업일이 아니라면, 소비자는 다음 영업일에 반품을 요청할 권리를 가짐

6-8. 결제한도

- 관련 법률 : N/A

6-9. 추천 광고

- 관련 법률 : N/A

II. 등급분류

1. 등급심의

1-1. 등급분류 필요여부(사전/사후)

- 관련 법률 : 2018년 8월 3일 조례 1189호
- 부연 설명 : 제34조에 따르면, 게임은 사전에 분류되어야 함. 단, 온라인으로만 배포될 게임의 경우 제35조에 따라 IARC 등급을 사용하여 자체 분류할 수 있다고 명시함

게임의 데모는 일시적인 ‘자체 분류’가 가능하고, 이후 최종 버전에 해당하는 게임의 심의 결과 등급으로 대체할 수 있음

1-2. 등급분류 주체

- 관련 법률 : 2018년 8월 3일 조례 1189호
- 부연 설명 : 법무공안부 산하 기구인 ClassInd에서 등급분류를 진행함

1-3.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

- 관련 법률 : 2018년 8월 3일 조례 1189호
- 부연 설명 : 다운로드 되거나 물리적으로 판매되는 모든 게임은 등급 검토가 필요함. 다운로드로만 배포하는 게임의 경우 IARC의 등급분류 절차를 따르고, 카트리지 등 물리적인 저장매체로 판매되는 게임의 경우 ClassInd의 등급분류 절차를 거쳐야 함

단, 게임이 인터넷 브라우저로만 실행되고 로컬로 저장되지 않는 경우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않으나 요청 시 등급을 얻을 수 있음

1-4. 게임 이용등급 구분 및 이용등급별 분류 사항

- 관련 법률 : 2018년 8월 3일 조례 1189호
- 부연 설명 : 조례 상 게임물의 등급은 아래와 같이 6가지로 구분되며, ‘성·나체’, ‘약물’, ‘폭력’ 카테고리에 따라 평가함
 - 1) L(일반)
 - 판타지적인 폭력표현 또는 폭력 없는 무기, 사망 등의 표현.

- 에로틱하지 않은 누드, 합법적인 약물의 암묵적 사용 등
- 2) 10(10세 미만에게 적합하지 않음)
 - 폭력성이 있는 무기표시와 공포·긴장감 조성, 교육적 맥락에서 삽입되는 비자극적 성 이미지, 합법적 약물 사용에 대한 설명 등
- 3) 12(12세 미만에게 적합하지 않음)
 - 폭력행위와 신체부상, 베일에 싸인 누드, 합법적인 약물의 사용이 드러나는 장면 등
- 4) 14(14세 미만에게 적합하지 않음)
 - 의도적으로 다른 캐릭터를 죽이는 행위, 신체부위 노출과 성애화, 불법 약물 사용을 암시하는 장면 등
- 5) 16(16세 미만에게 적합하지 않음)
 - 강간, 고문 등 범죄행위, 성교 묘사, 불법 약물의 사용 묘사
- 6) 18(18세 미만에게 적합하지 않음)
 - 높은 수준의 폭력과 잔인성, 명시적 성교, 불법 약물의 사용을 권장하는 행위

1-5. 등급분류 신청절차 및 필요 자료

- 관련 법률 : 2018년 8월 3일 조례 1189호
- 부연 설명 : 아래의 항목들을 ClassInd 메일로 송부해야 함
 - 1) 게임 등급 신청 양식 : ClassInd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2) 게임 개요 : 등급심사 진행에 적합한 게임 또는 게임 플레이 비디오

1-6. 등급분류 처리 기간 및 비용

- 관련 법률 : 2018년 8월 3일 조례 1189호
- 부연 설명 : ClassInd를 통한 등급분류는 최대 30일이 소요되며, 등급분류를 위한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IARC을 통한 등급분류는 일반적인 경우 신청 즉시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으며, 등급심사에 따른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2. 등급분류 사후관리

2-1. 등급분류의 거부

- 관련 법률 : N/A

2-2. 등급분류 이후 의무 표기 사항, 방법

- 관련 법률 : 2018년 8월 3일 조례 1189호
- 부연 설명 : 등급분류 표기 시의 색상규격이 존재함

내용정보와 등급분류를 포함하는 Information Box 표시 양식은 아래와 같음

- 1) ‘등급분류 체계(CLASSIFICAÇÃO INDICATIVA)’ 를 표기 하여야 함
- 2) 등급 기호 표기를 삽입하여야 함
- 3) 내용정보표시 표기는 최대 3개까지 각 행에 1개씩 작성하고, Arial 폰트의 7 사이즈, 검정색으로 작성해야 함
- 4) 등급의 공식 명칭 전체를 표기하여야 함
- 5) 각 단어는 대문자로 표기함

2-3. 등급분류 효력

- 관련 법률 : 2018년 8월 3일 조례 1189호
- 부연 설명 : 제47조에 따라 등급제 준수가 미흡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법무부에 신고 가능하고, 제48조에 따라 법무부가 해당 건을 조사하여 사실로 판명되면, 미흡한 수준에 따라 당국에 해당 내용을 보고함
법무부는 제49조에 따라 법무부 정책추진부를 통해 비디오게임 등급 준수 여부를 샘플링을 통해 모니터링 함

2-4.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자 준수 제도

- 관련 법률 : 2018년 8월 3일 조례 1189호
- 부연 설명 : 제33조제2항에는 이미 분류를 받은 게임 및 애플리케이션의 스페셜 에디션 등을 출시한 경우나 업데이트의 경우, 콘텐츠의

변화가 없는 한 등급 표시 분류를 새로 거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함

2-5. 등급의 조정

- 관련 법률 : 2018년 8월 3일 조례 1189호
- 부연 설명 : IARC 분류를 받은 경우, 게임 샘플링을 통해 분류 등급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에서 재분류 절차를 시작하고 그 결과를 연방관보에 게재하거나 IARC에 전자적으로 게시함
ClassInd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이후 10일 이내에 재검토를 요청하면 정부가 5일 내에 답변을 제공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재심의, 전체 혹은 일부 거부는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제기 해야 하고, 법무부 장관은 30일 내에 이에 대해 결정함

2-6. 등급분류의 취소

- 관련 법률 : N/A

2-7. 등급분류 효력 유지기간(별도 갱신 필요성)

- 관련 법률 : N/A

3. 확률형 아이템

3-1. 판매 가능 여부

- 관련 법률 : N/A

3-2. 적용 대상

- 관련 법률 : N/A

3-3. 준수 사항

- 관련 법률 : N/A

3-4. 미 준수 시 페널티

- 관련 법률 : N/A

3-5. 자율규제 존재 여부 및 세부내용

- 관련 법률 : N/A

4. 광고 관련

4-1. 콘텐츠 광고 규정 등 광고 내 등급 표기 관련 표시의무

- 관련 법률 : 2018년 8월 3일 조례 1189호
- 부연 설명 : 포스터, 카탈로그, 디지털 배포, 인터넷 등 표준 등급분류를 받은 제품을 광고하는 모든 매체에서 등급분류정보가 가시적이고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함

인터넷 광고의 경우, 등급분류정보는 브라질 대중을 대상으로 하여 높이 70픽셀로 웹사이트 상에 고지해야 함

Ⅲ. 본인인증/미성년자 관련

1. 본인인증/미성년자 관련

1-1. 본인인증/ID 생성

- 관련 법률 : N/A

1-2. 연령 확인(미성년자 연령 확인)

- 관련 법률 : N/A

1-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개인정보관련)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부연 설명 : 제14조는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아동이나 청소년의 법적 대리인 혹은 부모 중 최소 한 명의 구체적이고 분명한 동의를 요구하며, 이때 아동의 법적대리인이 동의를 했다는 바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수집자에게 있음

또한 제4호에서는 게임이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기타 활동에 미성년자가 참여 시 필요한 개인정보 외에 개인정보 제공을 조건화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함

1-4.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 관련 법률 : N/A

1-5. 미성년자 청약철회

- 관련 법률 : N/A

1-6. 강제적 섯다운제

- 관련 법률 : N/A

1-7. 섯택적 섯다운제

- 관련 법률 : N/A

1-8. 미성년자 정의

- 관련 법률 : 아동청소년법
- 부연 설명 : ‘5-1. 미성년자 연령 기준’ 참고

1-9. 미성년자보호법

- 관련 법률 : 아동청소년법
- 부연 설명 : 오락, 쇼의 연령적합성과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규정함

1-10. 미성년자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관련 법률(게임이용관련)

- 관련 법률 : N/A

IV. 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1-1. 개인정보 수집 방법(동의, 고지 등)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부연 설명 :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은 아래의 요건에서만 가능함
 - 1)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한 경우
 -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획득한 경우
 - 사업자가 자신의 법적·규제적 의무사항을 이행한 경우
 - 2) 정부기관이 공공정책의 이행 및 상법률에 규정된 조항에 따라 공유 및 취급을 요하는 경우
 - 3) 연구기관의 연구 진행 시 개인정보의 익명을 보장하는 경우
 - 4) 정보 보유자가 일방 당사자인 계약과 관련된 사전절차 또는 계약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1-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방법(동의, 고지 등)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부연 설명 : 제공 방법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조항은 없으나, 보안 유지 및 개인정보 주체의 익명성 보장을 법률 전문에 걸쳐 강조하고 있음. 개인정보 주체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함

1-3. 개인정보 처리 위탁(동의, 고지, 수탁 업체 계약방법)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부연 설명 : 수탁사 및 위탁사는 개인정보 처리 운영을 지속적으로 보고해야 함
수탁사는 위탁사가 제공한 도구 및 자료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함
위탁사는 정부당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민감성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방식을 지속 감시하고 수탁사에 위탁되는 최종

정보의 이동 및 수탁사 간의 운영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음

2. 개인정보 처리

2-1. 개인정보 파기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부연 설명 :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 취급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파기 하는 경우 수집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함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해당할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를 종료함

- 1) 개인정보 처리 목적의 달성
- 2) 처리 기간의 종료
- 3) 공익을 위한 사용에 관해 주체의 동의를 획득한 경우
- 4) 동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정부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6조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 종료 후에도 아래의 경우 보존이 허용됨

- 1) 사업자가 법적 규제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할 경우
- 2) 익명화된 개인정보를 연구기관이 활용한 경우
- 3) 법률이 규정한 개인정보 취급 요구사항을 따라 제3자에 제공한 경우
- 4) 사업자가 해당 정보의 제3자 접근을 막고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경우

2-2. 장기 미 접속 계정 휴면 처리 방법

- 관련 법률 : N/A

2-3. 개인정보 처리 방침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부연 설명 : 제50조제3호에 따라 감독관과 운영자가 운영 체제, 보유자의 불만과 청원, 보안 규칙, 기술 표준, 취급 방법과 관련된 여러

당사자의 구체적인 의무, 교육적 조치, 위험 요소를 감독하고
완화하기 위한 내부 메커니즘 및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다른 측면을 포함한 절차 등을 수립하는 규칙을 공개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2-4.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 관련 법률 : N/A

2-5.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 관련 법률 : N/A

2-6. 국외 이전 방법(동의, 방법, 동의 시 고지사항)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부연 설명 : 개인정보보호법 제5장은 정보의 해외 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33조에서는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이 유일하게 허용되는 상황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있음

1) 제2항에 따라 감독관이 원칙, 보유자의 권리, 본 법에 규정된
정보보호 체제의 준수에 대한 보장을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제공 및 증명할 시에는 개인정보의 해외이전이 허용됨

- 주어진 양도에 대한 특정 계약 조항

- 표준 계약 조항

- 글로벌 기업 표준

-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소인, 인증서 및 행동 강령

2) 제8항에 따라 보유자가 개인정보 운영의 국제적 성격에 대한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정보 국외 이전에 대해 구체적이고
분명한 동의를 제공하여, 여타의 목적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경우 해외이전이 허용됨

2-7. 광고성 정보(수신, 동의, 고지, 발송, 방법)

- 관련 법률 : N/A

3. 개인정보보호

3-1. 이용자 개인정보 권익보호방법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부연 설명 : 제3장은 모든 자가 본인의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8조는 아래와 같은 주요 권리를 정함
 - 1) 처리 실재 여부 확인
 - 2) 정보에 접근
 - 3)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고, 또는 유효 기간이 지난 정보의 수정
 - 4)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처리되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정보 또는 정보의 익명화, 차단 혹은 삭제
 - 5) 감독 기관의 규정에 따라, 상업 및 산업 기밀의 대상에 대한 명시적인 요청을 통해 여타 서비스 또는 제품 제공업체에 정보를 이전
 - 6) 동법 제1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 처리한 개인정보의 삭제
 - 7) 감독관이 정보를 공유한 공공 및 민간 주체에 대한 정보
 - 8) 동의 거부 가능성 및 그러한 거부 결과에 대한 정보
 - 9) 동의 철회

3-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보상보험 요건

- 관련 법률 : N/A

3-3. 데이터 침해에 대한 보상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부연 설명 : 제42조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감독관의 책임을 명시하며, 운영자가 법 상 요구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인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불법 행위책임을 질 수 있음을 규정함

제52조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제재는 기타 행정·민사·형사상 제재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을 명시함

3-4. 개인정보 유출 손해 배상 보험

- 관련 법률 : N/A

V. 기타 분류

1. 게임 관련 법령/규정

1-1. 게임법 유무

- 관련 법률 : N/A

1-2. 게임 관련 규정

- 관련 법률 : N/A

2. 경품 이벤트

2-1. 관련 법령

- 관련 법률 : 1971년 12월 20일자 법률 제5,768호(추첨, 상품권 또는 콘테스트를 광고에 관한 법률)
- 부연 설명 : 제1조에 따르면 추첨, 상품권, 콘테스트 혹은 이와 유사한 방식을 통해 수행되는 무료 경품 프로모션의 개최는 재무부의 사전 승인에 따라 결정됨

경품의 최고 가치는 구매 및 판매 운영을 왜곡하지 않도록 기업의 영업이익이나 경제활동의 성격과 관련하여 결정되며, 상품의 현금화 또는 분배는 금지 됨

3. 법인 설립/서버 필수 여부 등

3-1. 국내 대리인 지정

- 관련 법률 : N/A

3-2. 법인 설립 의무

- 관련 법률 : N/A

3-3. 서버 설치 의무

- 관련 법률 : N/A

4. 외국인 투자 제한

4-1. 외국인 투자대상 제외

- 관련 법률 : N/A

4-2.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 관련 법률 : N/A

4-3. 외국인의 국내 진출

- 관련 법률 : N/A

5. 서비스 허가증

5-1. 서비스 허가증(콘텐츠 제공시 승인사항)

- 관련 법률 : N/A

글로벌 정책환경 개선 TF 조사결과

브라질



한국게임산업협회 Korea Association of Game Industry

(06251)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24 청보빌딩 7, 8F

Tel. 02.6203.1900 Fax. 02.3477.2708 E-mail. k-games@gamek.or.kr